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605

발의연월일: 2024. 12. 17.

발 의 자:김성원・이종배・김선교

서일준 · 김정재 · 임이자

박성훈 • 백종헌 • 정동만

김소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됨.

최근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·가정 양립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 구분모집자도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사유인 경우, 필수보직기간(5년)이 지나지 않 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였음.

이에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·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자 함(안 제7조제5항).

법률 제 호
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무원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보(轉補)를 제한하지 아니한다.
- 1. 출산, 육아, 모성보호 등을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
-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7조(신규 채용) ① ~ ④ (생 | 제7조(신규 채용) ① ~ ④ (현행 |
| 략) | 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|
| |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|
| | 경우에는 전보(轉補)를 제한하 |
| | <u>지 아니한다.</u> |
| | 1. 출산, 육아, 모성보호 등을 |
| | 위해 전보가 필요한 경우 |
| | 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|
| | <u>는 경우</u> |
| <u>⑤</u> (생 략) | 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 |